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넘버엔월복리 적금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특약명, 기본적용약관 변경, 가입금액 명확화

개정 전	개정 후	~
<p><b>제1조 약관의 적용</b></p> <p><u>넘버엔(N°N) 월복리적금(구 외환은행)</u>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<u>‘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 및 ‘적립식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(생략)</p> <p><b>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적금은 <u>계약기간 동안 매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</u>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<u>계약기간 3/4이 지난 후에는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</u></p> <p>제5조 ~ 제8조 (생략)</p>	<p><b>제1조 적용범위</b></p> <p><u>넘버엔(N°N) 월복리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‘예금거래 기본약관’ 및 ‘적립식예금약관’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(좌동)</p> <p><b>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</b></p> <p>① (좌동).</p> <p>② 이 적금은 <u>계약기간 동안 가입자 1인당 매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</u>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<u>다만 계약기간 3/4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제5조 ~ 제8조 (좌동)</p>	<p>특약명, 기본적용약관 변경</p> <p>고객1인당 적립한도 및 3/4 경과후 추가적립액 표현 명확화</p>

## 「넘버엔 월복리 적금 특약」

### 제1조 적용범위

‘넘버엔(NON) 월복리적금’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‘예금거래 기본약관’ 및 ‘적립식예금약관’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### 제3조 계약기간

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### 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

- ① 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단위로 300만원 이내로 합니다.
- ② 이 적금은 계약기간 동안 가입자 1인당 매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계약기간 3/4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5조 일부해지

이 적금의 일부해지는 불가능합니다.

### 제6조 금리적용

이 적금의 금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금리에 제7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월복리로 적용합니다. 다만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단리로 적용합니다.

### 제7조 우대금리 적용

- ① 이 적금 가입일에 본인명의 당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0.2%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장애인고객이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연0.2%의 장애인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③ 제1항 및 2항의 우대금리는 만기에 해지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 제8조 이자의 지급

- ① 이 적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6조에서 정한 금리로 셈한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금리(단리계산)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 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

### 부칙(1)

이 특약은 2013년 5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### 부칙(2)

2014년 1월 10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

### 부칙(3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